

개정 전	개정 후
<p>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(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)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</p>	
<p>1.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재단</p>	
<p>2.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</p>	
<p>3.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</p>	
<p>⑥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</p>	